

06

세미나

1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정부회계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주최한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함

가. 개요

1. 일시: '18.4.20(금) 13:30~15:00
2. 장소: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층 교육장
3. 주최: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발표: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 북한 대학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

나. 발표 요약

-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 대학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김이배, 한국정부회계학회, 덕성여대)

'18년 4월 20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이배 교수(한국정부회계학회, 덕성여대)는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 대학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이배 교수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향후 남북한 회계학 정립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북한 회계학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02년 7.1 경제관리 조치 후 변화된 북한의 정부회계 체계를 설명하고, 북한의 정부회계 범주에 속하는 중앙회계, 지방회계 및 부문회계의 체계와 특징 및 회계처리에 대해 소개하였다.

〈주된 발표 내용〉

- 북한 정부회계의 체계에 관한 고찰
- 북한 중앙회계의 체계와 사례분석
- 북한 지방회계의 체계와 사례분석
- 북한 부문회계의 체계와 사례분석

주제발표에 이어 권선국 교수(경북대)가 사회를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남주 국가회계팀장(KIPF,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은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의 정부회계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남주] '02년 7.1 경제관리 조치 후 변화된 북한의 정부회계 체계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부회계를 비교해 볼 때 그 목적, 범위, 회계의 독립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인 북한은 당 또는 중앙정부가 최하위 경제활동 단위인 기업소, 협동농장까지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회계를 사용하고 있다. 남한의 정부회계가 국회, 정부,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공회계책임(accountability)을 이행하고 이를 평가받는 데 사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북한의 정부회계에는 중앙회계와 지방회계, 그리고 민간의 기업소에 해당하는 부문회계까지 포함하고 있어, 영리성 여부에 따라 기업회계와 정부회계를 구분하는 남한의 정부회계의 범주와 차이점이 있다.

셋째, 북한의 자금관리는 당 또는 중앙정부에서 직영 연합기업소 또는 시·도·군의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회계가 지방회계의 자금을 수납 받아 관리함에 따라 회계실체 간 재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 남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 회계학 정립을 위해서 북한 회계학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우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표방하는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례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시나 1960년대 말 확립한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 헌법보다 더 상위규범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호 법령의 비교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북한실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회계학 연구가 단계적,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좋을 것 같다.

2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포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IPSASB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2018년 5월 4일, 서울 조달청 중회의실에서 IPSAS 포럼을 개최하였다. 학계, 지방회계통계센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법인, 센터에서 총 16명이 참석하였으며, 발표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소개, 수익회계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소개라는 세 가지의 소주제로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맡았고, 참석자들은 IPSASB의 소개를 제외한 두 개의 소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수익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전중열 교수는 IFRS 15의 수행의무 개념은 계약서에 명시되는 구체적인 약속의 개념인데 국가와 국민 간 구체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공부문에 수행의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약속의 개념으로 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종운 교수는 영미법을 바탕으로 하는 IPSAS와 대륙법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 간 충돌이 예상되므로 채권·채무 확정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회계에 회계논리인 수행의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중수 교수는 수행의무의 개념이 모호해서 수행의무로 인한 부채의 관리가 어려워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행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행의무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회계통계센터의 박정규 팀장은 보조금의 경우 외부와의 구체적인 약속 개념으로 볼 수 있어 수행의무 개념 적용이 적절하고, 자본보조금 등 지자체의 보조금 회계처리를 개선하는 데 수행의무 개념이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정도진 소장은 할인율 변동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성 문제로 공시 방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 논의 이전에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한중수 교수는 할인율에 따른 변동성에 대한 설명은 보다 상세한 주석 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중열 교수는 사회보장급여 부채 인식 시 차기 급여 및 생존 개념을 이용하는 것은 IFRS 개념(종업원급여)과 괴리가 있는 회계처리이므로 IPSAS의 제정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센터는 이번 IPSAS 포럼 결과를 종합하여 IPSAS 의견개진 시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IPSAS 관련 이슈 논의를 위한 'IPSAS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IPSAS 포럼(5.4.), 서울 조달청 중회의실〉

3 2018년 한국회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가. 개요

1. 일시: '18.5.19(토) 14:40~16:10
2. 장소: 서울, 연세대학교 경영대 B2F 강의실
3. 참석자: 정도진(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임정혁(국가회계팀), 김선재(국가회계팀),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정아름(감사연구원), 김이배(덕성여대)
4. 발표: (주제 1)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현재와 미래
(주제 2) 수익거래에 대한 수행의무 개념 적용
(주제 3) IPSAS 사회보장제도의 소개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현재와 미래(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첫 번째 주제인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현재와 미래」는 IPSAS의 도입취지와 함께 IPSAS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재무보고 기준의 국제적 정합추세가 강화되므로 우리나라도 이와 발맞춰서 IPSAS 도입의 준비를 제안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전중열 교수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 IPSASB에서 공개초안(ED), 자문보고서(CP) 등 회계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수익거래에 대한 수행의무 개념 적용(임정혁, 국가회계팀 전문연구원)

두 번째 주제인 「수익거래에 대한 수행의무 개념 적용」은 IPSAS 현안에 대해 소개하고 수행의무 개념을 이용한 국가회계기준 수익 회계처리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익의 회계 처리시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PSPOA)에 따라 수행의무가 부과된 수익과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을 분류하여 인식기준을 살펴보고 현행 국가회계기준과 비교하여 개선가능성 검토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 목적세 및 부담금 등을 수행의무가 부과된 수익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CP에 제시된 범위보다 포괄적임

[임정혁]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회계의 현행 수익 계정과목체계를 바탕으로 구분한 사례이므로, 추후 수익유형별로 수행의무 유무 및 대표적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정아름] 수행의무가 부과된 수익의 사례로 든 목적세는 전체 조세의 약 10%에 불과하므로, 수행의무 접근법을 통해 수익으로 인식한다면 원가 대비 효익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정아름] 수행의무의 식별 기준, 범위 및 통합수준에 대한 검토 필요. 성과목표, 프로그램, 단위사업 수준 중 어느 수준에서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통합하여야 하는지 결정해야 함

[임정혁]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성과보고서상 단위사업 수준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별 성과목표에서 수행의무를 식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하고 있음

[정도진] 수행의무 접근법을 도입하면 수행의무별 순원가 정보를 통해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어 재무정보와 성과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나아가 지방재정분권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현 정부는 지방재정을 늘리기 위해 중앙 대 지방의 세입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변경을 추진

[정도진] 수행의무접근법을 통한 수익 인식을 통해 지방재정분권이 가속화에 따른 재정사업의 효율성 평가에 유용할 수 있음

[전중열]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수행의무 접근법을 지방정부에도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전중열] Category A, B, C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 수행의무 접근법 적용의 계량적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수행의무 적용시 재정운영표 서식에 미칠 영향을 제시할 필요

□ IPSAS 사회보장제도의 소개(김선재, 국가회계팀 회계사)

세 번째 주제인 「IPSAS 사회보장제도의 소개」는 IPSASB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설명하고 사회보장급여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접근법과 의무발생사전접근법의 측정기준을 살펴본 후, 국가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 공개초안 63의 경우 쟁점이 되는 의무발생사전 접근법과 보험접근법은 회계처리 관점에서 각각의 접근법에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 논의 필요

[전중열] 의무발생사전 접근법의 경우 수혜자가 차기급여분 만큼 수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채로 인식하는데, 이는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 필요

[전중열] 보험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검토에 기초한 부채적정성평가로 인해 부채 규모가 상당히 높아지므로 국가회계에서 이를 수용가능할지 의문

[전중열] 의무발생사건 접근법과 보험접근법 적용시 우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급여의 부채 규모를 산정할 필요 있음

[정아름] 사회보장급여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가 간 제도나 법, 문화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위험',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나 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정아름] 기준의 일관성 및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명확하게 기술하기보다 포괄적으로 기술함에 따라 나라별 일정부분 자율성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음

[정아름] '정의'를 수정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하는 방법 고려